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 10.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박재숙】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작성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허성관)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2) 출연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야 하는바,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우리 구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

3)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2021년도 출연금: 16,098천 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2019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3 (0.013%)을 출연금으로 배정
 ※ 2020.9.8. 지방세기본법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30994호)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계획안의 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2019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0.013%)에 해당하는 16,068천 원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함이며,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합당하므로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재정정책의 연구는 물론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의 지원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